

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

<2019.03.01. 개정>

<2019.12.16. 개정>

<2020.11.05. 개정>

<2021.02.04. 개정>

<2021.08.05. 개정>

<2022.02.03. 개정>

<2022.10.30. 개정>

<2024.7.8. 개정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 학칙 제71조 제7항에 따라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3.01.>

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,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조직

제3조(위원회) ① 본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학사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9.1.25.>

② 본 위원회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하고, 본 과정 주임교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주임교수 등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업무를 담당할 주임교수 1인을 둔다.

② 주임교수는 교과목 개설, 수업진행, 지도교수의 제청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운영·관리한다.

제3장 입학

제5조(입학자격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, 국내·외 석사학위 (전공 불문)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국내·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
 2. 법률 유관 분야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, 법률 유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
 3.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과 관련한 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<개정 2021.2.4.>
- ② 전항 각호의 입학자격 요건에 관한 해당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개정 2021.02.04.>

제6조(선발인원)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각 학기 선발인원은 동 과정의 학사운영위원회가 총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.

제7조(입학전형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에 의하며,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주관과 책임하에 진행한다.

② 입학전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편입학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국내·외 대학원에서 동일(유사) 과정 및 학과(전공)의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,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(수료자 포함)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8.05.>

② 편입학의 전형시기,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등록, 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, 재입학

제9조(등록)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4.7.8.>

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4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얻는다. 다만,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최소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얻는다. <개정 2021.08.05., 2024.7.8.>

제9조의2(등록금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초 정규등록 시에는 수업료를 연구등록 시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.

② 입학금은 입학 및 재입학 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4.7.8.]

제10조(휴학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16.>

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, 통산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,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16.>

③ 휴학자는 휴학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며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복학)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이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의

허가를 얻어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16.>

제12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1.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2.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3.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4.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

제14조(재입학)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학연한 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.

② 재입학의 허가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 제1호, 제2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의2(특례재입학) 제16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2.10.30.>

제5장 학사운영

제15조(학기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기는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.

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, 계절학기 당 취득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한다.

제16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개 학기로 한다.

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제34조 제1항 단서의 논문 제출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10.30.>

제17조(수료학점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의 학점은 24학점(연구학점 제외)으로 하며,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(연구학점 제외)로 한다.<개정 2016.9.12.>

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(연구과목 포함)은 1과목 당 3학점으로 하며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.

제18조(연구학점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하여는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개 학기에 걸쳐 총 6학점 이상의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연구학점은 1학기당 3학점으로 한다.

③ 연구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 수업개시 이후 일주일 이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연구과목 수강생은 논문연구보고서를 매 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연구평점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9조(교과목, 이수과목 및 선수과목 요건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본 과정 교과목 및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, 본 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으로 한다. <개정 2019.12.16.>

②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앙대학교 타 대학원의 교과목의 경우 본 대학원 교육과정평가·개발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수강하는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<신설 2019.12.16.>

③ 수강생은 특정 전임교원 1인의 교과목을 12학점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. 단 연구학점은 예외로 한다.

④ 비법학사 또는 비법학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 취득학위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9학점까지 선수과목 수강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선수과목의 선정은 원생의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.

제20조(논문지도교수의 선정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1차 학기내에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21조(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) ①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,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.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.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.<개정 2019.1.25.>

등급	취 득 점 수	평 점	100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
A ⁺	95점 이상	4.5	100
A	90 ~ 94	4.0	94.28
B ⁺	85 ~ 89	3.5	88.57
B	80 ~ 84	3.0	82.85
C ⁺	75 ~ 79	2.5	77.14
C	70 ~ 74	2.0	71.42
P	PASS	없음	없음
F	0 ~ 69	-	-

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는 본 대학원 학생에 대한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.<개정 2017.7.25.>

제22조(재수강) F학점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9.12.16.>

제23조(학점인정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취득 학점을 인정한다.

② 전문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 교과목 동일성 여부는 학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. <개정 2021.08.05.>

제24조(강좌개설) ① 본 과정에 개설된 과목의 수강생이 2인 이하인 경우 당해 과목은 폐강한다.

② 본 과정에 강좌를 개설할 경우 교수 1인당 학기당 1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할 수 없다. <개정 2021.08.05., 2022.02.03.>

③ 본 과정에 개설된 강좌와 동일한 과목명의 강좌를 당해 학기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개설할 수 없다. <개정 2021.08.05., 2022.02.03.>

④ 본 과정의 강좌를 개설하는 교원은 당해 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. <개정 2021.08.05., 2022.02.03.>

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과목을 개설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. 이 때, 불가피한 사유는 전문박사학위과정 전공운용 및 강좌개설에 관한 지침 제3조를 따른다. <개정 2019.1.25., 2021.08.05., 2022.02.03.>

제25조(수강신청 변경)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25조의2 (교과과정 운영) ① 수업은 학기당 16주를 원칙으로 하되, 본 대학원 학칙 제 3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축소할 수 있다. 수업일수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강의의 진행은 수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고 학기당 강의시간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학습, 실무실습 등의 방법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9.3.1.]

제26조(학생의 교수 연구에의 참여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연구프로젝트의 유급 연구보조원으로 연구과목 담당지도교수 내지 논문지도교수의 연구에 1학기 이상 참여하여 연구성과 산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관련된 연구과목의 지도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 참여자는 매 학기 수업개시 일주일 이내에 담당 지도교수의 연구주제와 관련해 연구학점 취득을 위한 연구 참여 부분을 선정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연구 참여자가 담당 지도교수의 연구 참여에 의해 연구과목 학점취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 참여 부분에 대한 논문지도교수의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7조(출석)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과목의 성격상 강의 참여가 수업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건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적 출석일수를 강화할 수 있다.

제28조(교과목 개설) 학기별 개설 교과목은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9.03.01.>

제6장 논문심사

제29조 (학위 부여 전공명칭) 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부여되는 학위명은 아래와 같다.

헌법, 민법, 형사법, 민사소송법, 상사법, 행정법, 경제법, 국제거래법, 국제법, 국제사법, 법철학, 사회법, 조세법, 지식재산권법

제30조(논문계획서 제출)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출된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새로 제출하고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1개 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전공 종합시험으로 한다.

② 전공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전문박사학위 과정생은 2차 학기 이상 수료해야 한다. <개정 2019.12.16., 2020.11.05.>

③ 전공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16.>

④ 전공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의 교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로 하며,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9.12.16.>

⑤ 전공 종합시험은 2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<개정 2019.12.16.>

⑥ 등재(후보)지에 주저자(단독 혹은 공저)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전공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

제32조(재시험)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응시할 수 있다.

제3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전문박사학위 청구논문(이하 '박사학위논문'이라 칭한다)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9.12.16.>

1. 전문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
2.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
3.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합격하거나 혹은 이를 대체하는 논문요건을 충족한 자<개정 2019.12.16.>
4. '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' 과목을 이수한 자<개정 2022.02.03.>

제34조(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과 제출시기 등) ①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재학연한으로 한다. 다만,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, 신분변동, 연구년,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, 해외유학, 해외근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종합병원에

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9.12.16., 2022.10.30.>

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4월과 10월중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문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16.>

1. 박사학위논문
2. 학위논문제출승인서
3. 학위논문 연구윤리 서약서

제35조(외국어 논문) 전문박사학위 논문의 언어는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논문지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36조(심사위원)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

② 심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, 교외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제37조(심사위원장) ① 전문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8조(심사위원 교체 금지)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심사위원의 질병, 해외여행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
제39조(논문심사)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진행한다.

② 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심사를 의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심사결과 논문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.

④ 논문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.

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이내에 심사용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제40조(논문최종작성) 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논문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1조(논문의 공표)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

여야 한다.

제7장 학위의 수여와 취소

제42조(학위수여) 전문박사학위는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중 심사위원의 최종 인준을 받은 논문을 소정의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, [별지서식 1]의 학위기를 부여한다. 다만,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[별지서식 1-1]의 영문학위기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43조(수여학위 취소) 전문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0. 11. 05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본 개정 규정 중 제31조 ②항은 2015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개정 2021. 02. 04.>

본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1. 08. 05.>

본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2. 02. 03.>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본 개정 규정 중 제33조 제4호는 2022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개정 2022. 10. 30.>

본 규정은 202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4.7.8.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